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0
----------	------

제출일자 : 2021. 12.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국가보훈처 수수료 면제 개선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공평하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제증명 등 수수료도 취지에 맞게 개정
- 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 및 개정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로 개정 (안 제5조제1항)
- 나.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을 각각 “유족 또는 가족” 으로 개정
- 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 1GB마다 800원 |
| ※ 매체비용은 별도 |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2) 전자정부법 제14조
- (3)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4)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각각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부양사실 증명		1통	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1통	1,000원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1통	1,000원	
·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3.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1,0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000원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원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1) 세목별 과세증명				
5. 회계에 관한 증명		1통	1,000원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1,0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1,000원	
(6) 보상금 지불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기타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1통		1,0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3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3)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외국인등록표등본		1통		300원			
(6)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등 본		1필지		1,000원			
				(칼리발급의			
				경우 1,500원)			
· 열 람		1필지		400원			
(8) 비주거용 개별(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신규		1건		5,000원			
2)갱신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100원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		1건		600원			
2. 산림관계							
(1)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1건		1,0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2,500원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1건	2,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 석유대체연료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2,500원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	척당	1,2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2,2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3,2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1,000원		
(6)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1,000원		
(7)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700원		
(8)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9)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10)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11)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6)	적출물처리업자지정	1건		10,000원			
(7)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9)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1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12)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10,000원			
(13)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종합유원시설업	1건		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50,000원			
(6)	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종합유원시설업	1건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1건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1건		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8)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1건		20,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20)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1)	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2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2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7)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28)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1건		20,000원			
(29)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원			
(3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원			
(3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신설>	
(3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신설>	
(3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1건		4,000원		<신설>	
7.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		1건		300원			
8.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사항		1건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신고		1건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6,000원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7)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6,000원			
(8)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9) 기타 · 영업양수 신고		1건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 료에 준함			
9. 부동산 중개업 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내수면 어업법 및 양식업 관련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신 설>
· 공동어업	1건		7,500원	<신 설>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3)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6)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신 설>
(7)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1건		1,000원	<신 설>
(8) 양식업 변경 허가	1건		1,500원	<신 설>
(9) 양식업 변경 신고	1건		1,500원	<신 설>
(10)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신 설>
11. 화물운송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1대당		1,500원	
12.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건		3,000원	
(2)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		20,000원	
13.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4. 어선법 관계				
(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1건		1,000원	

선적증서, 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		3,000원	
(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800원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2,000원	
(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또는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		5,000원	
(1)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2)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신청	1건	5,000원	
(3)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별표 2】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금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생 략)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u>해당</u>)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u>해당</u>)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 ③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u>또는 가족</u>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u>또는 가족</u>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호(2020.12.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유형 4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 (정비대상) 지자체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

- (사용의무 규정)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0000시 0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0000시 0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사용원칙 규정)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0000시 000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0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0조의 수수료는 「0000시 000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2. (생략)

- (문제점)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우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비방향)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①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②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현행	예시안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수수료는 0000시 0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u>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5359호(2020.8.28)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또는 질병)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1급~7급)로,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혜택에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

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 개정안 예시 1 - ○○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 00. (생략)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1. 4. 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